

近隣 公園 解除 또는 造成에 관한 建議案

議案 番號	141
----------	-----

發議日字：1992. 7. 18

發議者：金 容濬 議員外 5人

主 文

- 西區 邊洞 地域의 野山을 都市 計劃上 公園으로 施設 決定하여 開發 計劃이 없이 放置된 狀態로 雜木이 우거져 靑少年 犯罪 誘發과 쓰레기 放置로 周邊 住民들의 不安感과 不快感을 造成 하고 있는바, 公園을 解除하여 住居地域으로 用途 變更하거나 早速한 公園 開發로 市民 休息 空間을 提供토록 大田直轄市長 에게 建議함

提案理由

- 西區 邊洞 山 1-1 番地外 10筆地 28,250m²에 대하여 1986. 9. 22. (建設部 告示 第422號) 公園(近隣公園)으로 施設 決定된 住居 地域內의 小規模 公園으로 地域 住民들에게 便益 施設을 擴充하여 休息 空間을 提供하는 次元에서 바람직한 事項으로 判斷되나, 現在 雜木이 우거져 不良 靑少年의 虞犯 地域이며, 쓰레기 放置로 地域 住民들에게 不安感을 造成하는 結果를 招來하므로 現地 實情을 勘案, 充分한 檢討로 住居 地域으로 用途 變更하거나 早速히 公園을 開發토록 促求 建議하고자 함.

청 원 의 요 지

서구 변동과 도마동 사이의 9316평의 공원부지 고시를 해제하여 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1. 공원부지 현황

변동과 도마동 경계도로에 접한 변동산 2-1토지 3과 5필지 9316평 소유자 이영학외 23명의 사유재산인데 1970년 대전시 환지사업에서 공원 부지로 지정된 후 쾌적한 도시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우거진 잡목과 오물쓰레기의 방치는 물론 청소년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공원으로 부당한 이유

가. 환지후 공원으로 지정당시 형식적인 공람, 공청을 하였을뿐 토지소유자와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과 전혀 합의없이 시의 일방적 공권력에 의하여 책정되었으므로 부당한 고시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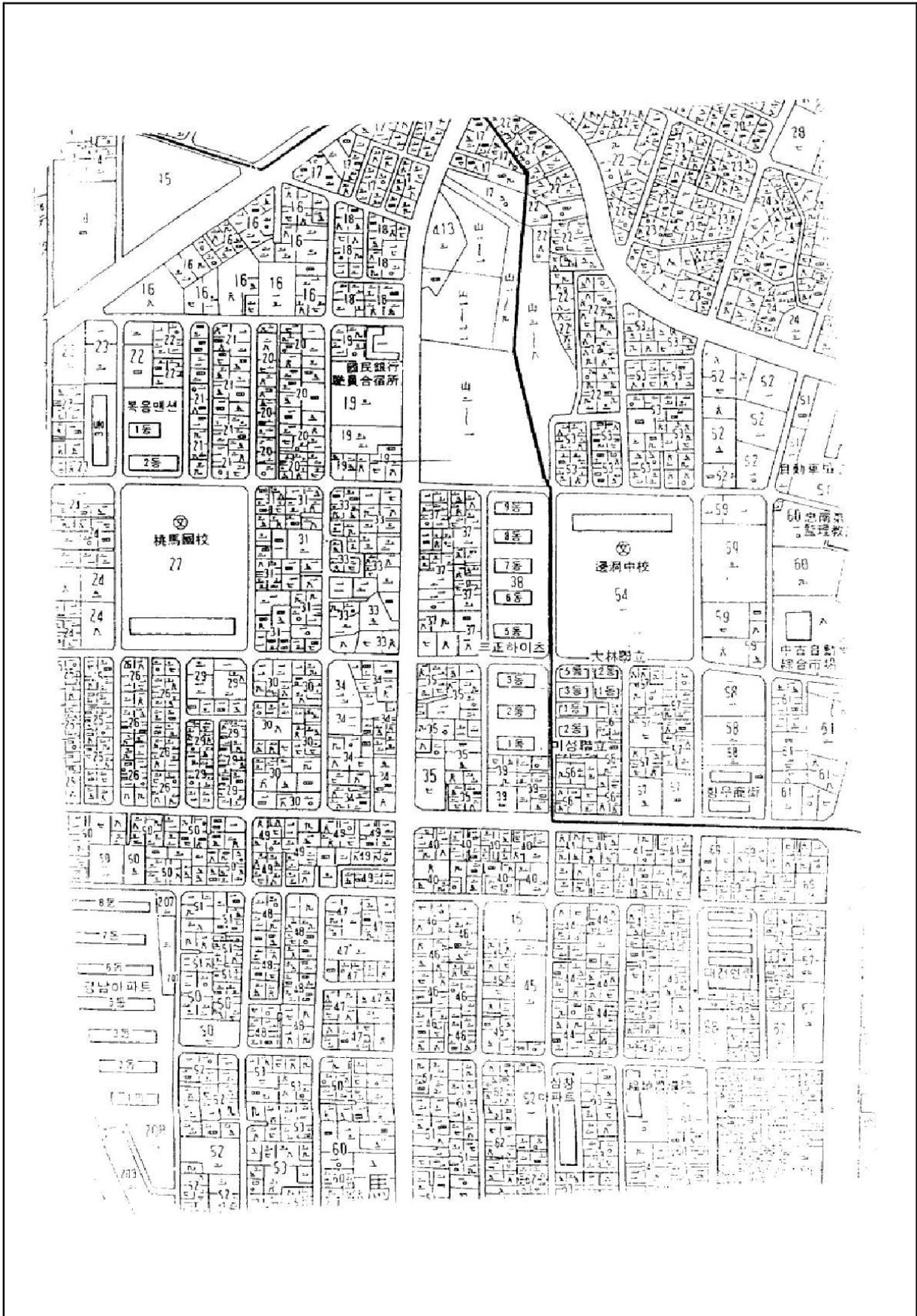
나. 잡목이 우거진 수림으로 오물과 쓰레기의 축적 또한 근동범죄 행위의 은거 및 불량청소년의 은거지 인데다가 통행인이나 근동 주민의 불안감과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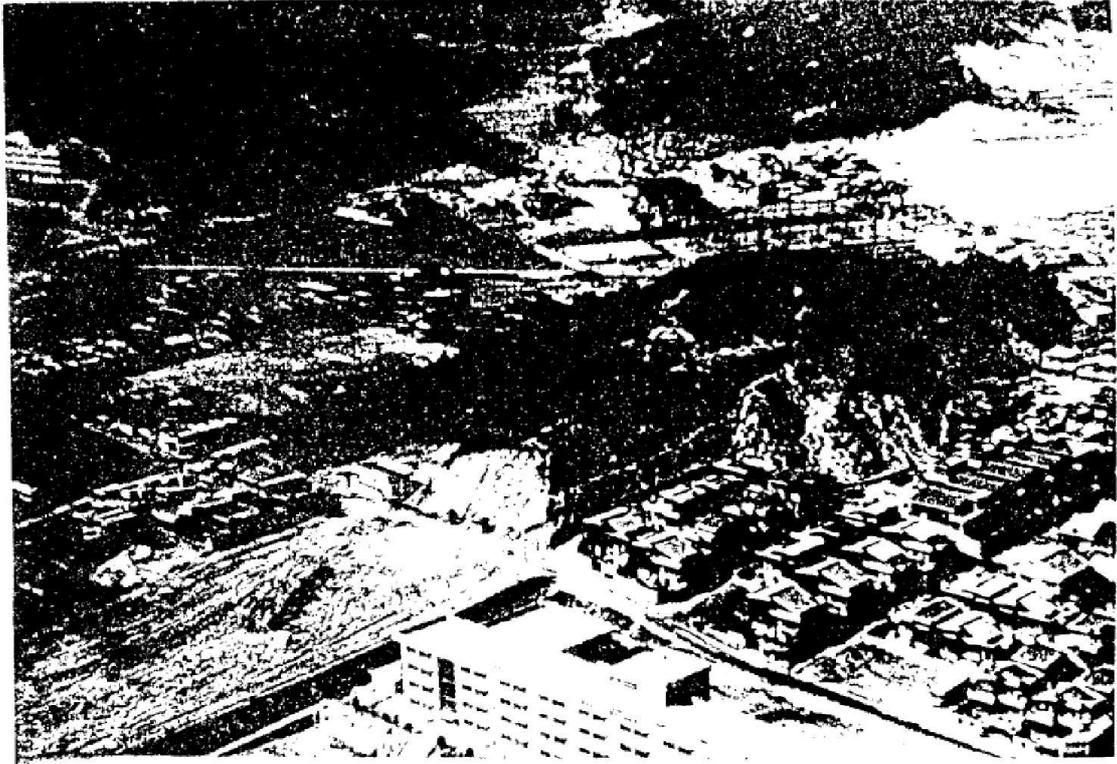
다. 이지역의 동부는 과거 택지개발도중 공원이 지정되었으므로, 급격한 경사지가 형성되어 낙반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점.

라. 일방적 공권력의 고시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불법 침해했다는 점.

마. 고시자체의 부당성과 고시후 공원으로써의 부적합성을 당국에 수차 탄원하고 600여 주민이 연명 진정하였으나 당국은 별첨 답변과 같이 그때마다 용도변경에 따른 절차와 소속운운의 답변으로 극히 사무적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과연 민주화 시대 기본 행정이 이대로 좋은지 110만 민의의 전당인 대전직할시 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주시어 이지역 주민의 청원내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2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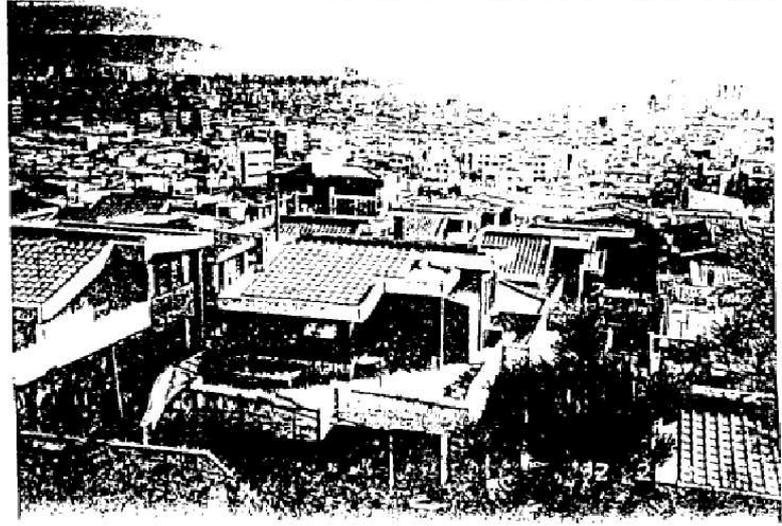


도심속의 장애물(공원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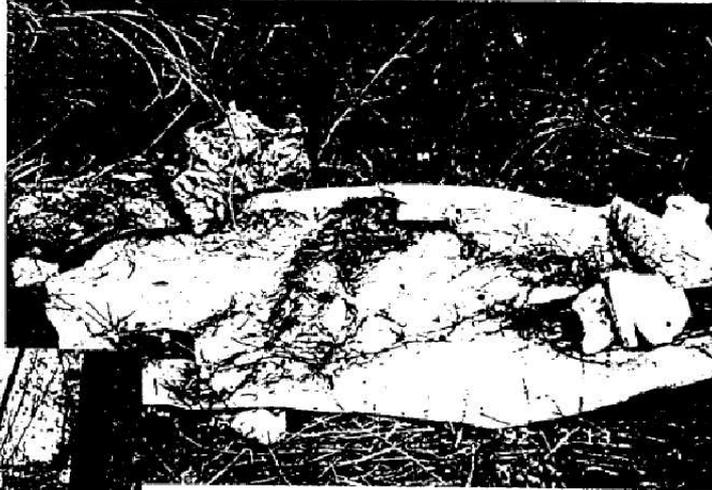
가옥의 밀집



가옥의 밀집으로 인한 사교적
의향적 공동체
형성되어
주민들 모두 용이



청소원 우범 지역화



배경청소년의 활동장소
제공의 역할



- 성폭력 장소로의 문제점야기

배경청소원 우범지역
제공의 역할
성폭력 장소로의 문제점야기

